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35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황 희·김종민·김병주

이건태 • 추미애 • 허 영

박지원 · 김준형 · 주철현

조승래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하여 현역 군인에 대하여 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으로 하여금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3(문화시설 등의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
	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